

『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』
신산업 기업체 청년 현장실습비 지원사업
신규 참여기업 6차 모집 공고

관내 신산업 기업체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청년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
현장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「신산업
기업체 청년 현장실습비 지원사업」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
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12월 4일
(재) 창 원 산 업 진 흥 원 장

I **사업 개요**

- 사 업 명 :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
- 과 정 명 : 신산업 기업체 현장실습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(기업) 관내 신산업 기업체
(청년) 관내 만19세 ~ 만39세 미취업 청년
※ 상세한 지원 조건은 아래 [Ⅲ.지원조건] 참조
- 모집기간 : 2024. 12. 4.(수) ~ 2024. 12. 18.(수) 13:00까지

II **지원 내용**

● 모집인원 : 명

지원유형	지원내용		
	인원(명)	지원내용	지원기간
청년 현장실습 인건비 지원	42	- (기업) 청 년 1인당 130만원/월 *2개월 이내	※ 근로시작일 로부터 2개월 이내
현장 맞춤형 신산업 분야 특화 인재 육성교육	42	- 재직자 간 현장직무교육 [10시간] - 집합교육을 통한 직무소양교육 [5시간]	

- ※ 인건비 지원은 기업당 최대 3명 가능
- ※ 모집 연장 및 중도퇴사자 발생시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- ※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시간 있음
- ※ 지원기간은 채용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III

지원 조건

- [필수 요건]
-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, [23년 기준]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입/매출 증빙이 가능한 중소기업
 -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며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(중소기업자의 범위)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됨
 - 아래 신산업 관련 *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거나, **추가 지원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신산업 연관 전후방 산업군을 지원하기 위함)
 - 인건비 월 통상임금(연장, 휴일근무수당 등 제외) '24년 기준 최저임금(월급) 이상 지급 기업
 - 4대 보험(건강, 국민, 고용, 산재보험) 가입 기업

< 지원 산업군 >

- IT, 물류, R&D 등 신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산업군
- ※ 신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

업종코드		업종
대분류	중분류	
제조업 (C)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
	C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	C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	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	C24	1차 금속 제조업
	C25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
	C26	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	C27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
	C28	전기장비 제조업
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	C313	항공기,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
	C33	기타 제품 제조업
	C34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
정보통신업 (J)	J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J59	영상,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
	J60	방송업
	J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	J63	정보서비스업
운수 및 창고업 (H)	H49	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
	H50	수상 운송업
	H21	항공 운송업
	H52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
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(M)	M70	연구개발업
	M71	전문 서비스업
	M72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
	M73	기타 전문, 과학 기술서비스업

- [추가 지원 산업군]
- 소부장, 항공, 에너지, 자동차, 기계, 원자력, 방위 관련 분야

기업

[참여 배제]
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의 체불 및 세금 미납 기업
-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※ 완전자본잠식상태 :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“-(마이너스)” 이면 자본잠식으로 판단
- 신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

<신청제외 대상(업종)코드>

업종 분류	업종코드	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 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22 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5,56	숙박업, 주점업, 비알콜 음료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 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 및 임대업	68	부동산업, 임대업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익업	731	수익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1	스포츠서비스업, 오락관련 서비스업, 캠블링 및 베틱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	이용업,미용업, 욕탕업, 마사지업,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청년	[필수 요건] - 24년 1월 1일 기준 만19세 ~ 만39세 청년 - 미취업자(실업자+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 - 창원시 거주자(주민등록등본 증빙) (사업기간 동안 창원시 주민등록 유지,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참여 1개월 이내 전입 가능) ※ 단, 관내외 상관없이 대학생 재학생 일 경우 등본상 주소지 무관 [참여 배제] - 현장실습 및 직접일자리아업(인건비 지원사업 등) 중복·반복 참여자 - 단기성 채용 형태 (산업기능요원 등) 근무자 - 참여기업에서 1년 이내 퇴사한 자 (공고일 기준) - 참여근로자가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
----	--

IV 추진 일정

1) 모집공고 및 접수 : '24. 12. 04.[수] ~ 12. 18.[수] 14:00까지 •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제출
↓ 2) 기업 선정평가 : '24. 12. 19.[목] 예정 • 선정평가
↓ 3) 결과 통보 : '24. 12. 20.[금] 예정 • 기업 선정 결과통보 ※ 선정결과 통보일 이후로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선정결과 통보일 이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
↓ 4) 사업안내 : '24. 12. 23.[월] 예정 • 선정기업 대상 사업 운영방안 등 안내(필수참석)
↓ 5) 현장실습 근로자 채용 통보 : '24. 12월 中 [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~24.12.31.[화]] • 선정 결과 통보 후 기한 내[24.12.31] 채용 사실 통보해야 함 -> 기한 내 미채용 시 사업 지원 자동 종료 ※ 모집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 (개별통보)
↓ 6) 근로자 적격 여부 검토 및 사업 수행 : '24. 12. ~ '25. 2. • 근로자 적격 여부 검토 : 근로자 채용 통보 후 진행 사업 수행 : '24. 12. ~ '25. 2. (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) ※ 채용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

- ※ 상기 일정은 창원산업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행도중 사업 포기 및 지원중단 상황 발생 시 지원 종료. 지원종료 시 추가지원을 위한 후보기업도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예정
- ※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
- ※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며, 선정결과 통보일 이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

사업 신청 및 접수

모집/접수기간 : 2024. 12. 04.(수) ~ 2024. 12. 18.(수) 13:00까지

신청방법

- 홈페이지 접수(www.cwip.or.kr - 사업신청 - 지원사업 신청)
-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 > 방문제출

접수처)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3 (팔용동, 창원반계엘에이치아파트) 2층 창업지원센터

※ 평일 09:00 ~ 18:00 (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불가)

신청서류 ※ 해당 서류 원본 제출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참가신청서 1부	[서식 1]
2	기업소개서 1부 및 관련 증빙자료	[서식 2]
3	참여기업확인서 1부	[서식 3]
4	참여제외대상 확인서 1부	[서식 4]
5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8	법인등기부등본 1부	법인에 한함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발급기준일 : '24. 12. 04.(수) 이후
10	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	발급기준일 : '24. 12. 04.(수) 이후
11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	대상 : 전체근로자 조회기간 : 1년 전 ~ 사업신청일 예시) 2023.12.04. ~ 2024.12.04.
12	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(2022년~2023년) 1부	※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」 대체 가능
13	우대사항 등 가점에 필요한 서류	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(미제출시 불인정) ※ 장애인 고용기업 : 해당 직원 복지 카드 제출

V

평가기준 및 방법

- 선정기준 :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확인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방법 : 정량 및 정성 평가
- 평가기준

평 가 항 목	평 가 구 분	배점
재무건전성	◦ 매출액(2개년도 매출성장률 포함) ◦ 부채비율 ◦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 등 세금 납부 현황	40
복지 후생	◦ 통근버스, 교통비, 차량 유지비 ◦ 기숙사, 주택자금 지원 ◦ 교육비 지원, 자녀 학자금 지원 등 ◦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, 재택근무 등 워라벨 관련 지원 제도 ◦ 일-가정-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	10
청년고용 비율	◦ 청년고용 현황	10
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	◦ 회사소개 및 주요생산물 ◦ 기술개발계획 및 발전 가능성 ※ 운송업 및 창고업은 아래 [별표1] 내용 참조	30
기술인증 및 과제수행실적	◦ 기술인증 및 정부과제 수행실적(최근 3년)	10
우대사항	◦ 장애인 고용기업, 일자리 으뜸기업, 청년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, 여성기업인 : 각 인증기업 당 가점 2점	최대 8점

- ※ 동점일 경우,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(회사소개 및 주요생산물 > 기술개발계획 및 발전가능성)를 받은 기업 선정
- ※ 서류 미제출 시 배점 0점 부여 단, 재무제표 미작성 사업장은 매출성장률·부채비율 최저점 부여 [별표1]
- 표준산업분류코드 ‘운수 및 창고업(H)’ 인 경우 - 기업 성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증 (※ 기타 법정 의무교육 이수증 인정) 및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할 것!

VI

문의처 및 유의사항

- 담당 : 창업인재양성팀 김보현 사원
- (☎ 055-716-7740, e-mail : kbh006@cwip.or.kr)
- 유의사항
 -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·누락, 관련 증명서 미첨부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소정의 양식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wip.or.kr) 공고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